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저층주거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
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
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는
8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와
소공원,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보조가 가능합니다.
- 재개발 사업지 및 인근의 주차장 및 공공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한 만큼
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에
‘공용주차장’ 과 ‘공공공지 및 광장’ 을 추가하여
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은 부칙 삭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, 부칙<제6899호,2018.7.19.>에서 이렇게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.

- 곧 확정될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서 정비사업을 현행대로 구분 운영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, 계획의 수립·고시 때까지만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을 부칙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